

「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만료일이 2024. 12. 31. 일자로 도래함에 따라,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·안전·영양 지도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「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」 사업을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: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- 추진근거
 - 1)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
 - 2) 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 제12조의2
 - 3)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

○ 위탁사무: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
- 1) 급식소에 대한 영양·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
- 2)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,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
- 3) 어린이의 연령별, 노인·장애인 등의 질환별·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·보급
- 4) 어린이, 조리원, 취약계층,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5)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
- 6)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,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, 식생활 교육 및 상담
- 7)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·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위생·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위탁시설 개요

- 1) 시 설 명: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
- 2) 사업대상: 총 404개소 9,659명

(어린이급식소 363개소 8,756명, 사회복지급식소 41개소 903명)

- 3) 직원현황: 20명(센터장 1, 팀장 3, 직원 16명)

○ 위탁기간: 2025. 1. 1. ~ 2027. 12. 31. (3년)

○ 소요예산: 1,170백만원(국비 585, 지방비 585)

○ 수탁기관 선정개요

1) 모집방식: 일반공개모집

2) 자격요건
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 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3) 선정방법: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
4) 평가내용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
○ 적정성검토결과: 적정 ※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

○ 추진일정

- 1)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개최 : 2024. 11.
- 2)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: 2024. 12.
- 3) 위수탁 협약체결 : 2024. 12.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시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(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, 다함께 돌봄터 등)와 사회복지 급식소(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, 장애인거주시설 등)의 위생·영양 관리를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수탁 기관 선정 후에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전문적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환경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